

15. 조세감면건의및평가에관한규정

재정경제부고시제1999-8호 1999. 3. 15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)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2항에 규정된 조세감면건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.

②여러 건의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우선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조세감면건의가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3조(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)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3항에 규정된 조세감면평가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.

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적용기한 만료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한다.

③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제3호

에 의한 조세감면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범위 확대에 관하여 제2조의 조세감면건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에 의한 조세감면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개별 조세특례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.

제4조(보정요구) 조세감면건의서 및 조세감면평가서에 기재될 사항이 누락되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에 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5조(디스켓의 제출) 조세감면건의서 및 조세감면평가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건의서 및 조세감면평가서를 디스켓에 수록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(앞면)

① 일련 번호	— — —
② 부(청)	조 세 감 면 건 의 서
③ 제 목	
④ 건 의 내 용	
⑤ 조세감면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	
⑥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세수감소액	
⑦ 조세지원이외 재정, 금융등 지원 여부	
⑧ 참고 및 설명 자료 목록	

담당자 : ○○○ 국장 ○○○
○○○ 과장 ○○○ (Tel :)

유관기관 :

규격 : A4용지

작 성 요 령

1. ①란에는 조세감면건의서의 제출연도와 우선순위를 다음의 예에 따라 기재합니다.(예 : 일련번호 99 - 1)
2. ②란에는 조세감면건의서를 제출하는 기관명을 기재합니다.
3. ③란에는 제목을 사업별·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4. ④란에는 어떠한 내용의 감면을 건의하는지를 간략히 기재하며, 현행·개정안 조문대비표등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.
5. ⑤란에는 조세감면의 필요성 및 계량화된 기대정책효과를 간략히 기재하며,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.
6. ⑥란에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세수감소액 및 산출근거를 연도별로 간략히 기재하고,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.
7. ⑦란에는 조세지원 이외의 재정, 금융 또는 기금 등의 지원여부에 대한 설명과 지원금액을 간략히 기재하며,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.(현재 지원건의 중인 경우에는 그 건의내용을 기재합니다.)
8. ⑧란에는 외국의 사례 및 관련 통계자료등 조세감면건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, 자세한 내용은 별첨하여 제출합니다.
9. 앞면 하단의 유관기관에는 조세감면건의와 관련된 산하기관명을 3개 이내에서 기재합니다.
10. 본 건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량화된 수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.
11. 조세감면건의서의 작성과 관련된 의문사항은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(☎500-5311~53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(앞면)

— — —

① 부(청)	조 세 감 면 평 가 서
② 제 목	
③ 조세감면의 제도에 대한 총괄적 평가	
④ 조 세 지 원 실 적 추 정	
⑤ 조세지원 전후 경제·사회적 효 과 비 교	
⑥ 조세지원이외 재정, 금융등 지 원 실 적	
⑦ 참고 및 설명 자 료 목 록	

· 담당자 : ○ ○ ○ 국 국장 ○ ○ ○
 ○ ○ ○ 과 과장 ○ ○ ○ (Tel :)

유관기관 :

규격 : A4용지

작 성 요 령

1. ①란에는 조세감면평가서를 제출하는 기관명을 기재합니다.
2. ②란에는 제목을 사업별·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3. ③란에는 조세지원제도의 존치 및 폐지 여부등에 대한 의견 및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며,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..
4. ④란에는 조세지원으로 인한 세수감소액을 계량화하고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며,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.
5. ⑤란에는 조세지원으로 인하여 변화된 경제·사회적 효과에 대한 전후 비교 설명과 계량화된 수치를 간략히 기재하며,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.
6. ⑥란에는 조세지원 이외의 재정, 금융 또는 기금 등의 지원실적에 대한 설명 및 계량화된 수치와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기재하며,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.
7. ⑦란에는 외국의 사례 및 각종 관련 통계자료등 조세감면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, 자세한 내용은 별첨하여 제출합니다.
8. 앞면 하단의 유관기관란은 조세감면평가와 관련된 산하기관명을 3개 이내에서 기재합니다.
9. 본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량화된 수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.
10. 조세감면평가서의 작성과 관련된 의문사항은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(☎500-5311~53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